

# 2023년도 권역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안내

## 1.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개요

- (목적)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현안 검토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·운영
  - 기타공공기관 최초 규제애로 해소 창구(기업성장응답센터) 개설(21.2.26.)
- (현황) 진흥원(제도운영팀)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(총 17개소)를 설치하여 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검토
  - 권역별 센터에서 규제애로 신고·접수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상시 발굴 및 현장과의 직접 마련
    - \* 지역별 센터 접수: 2021년도 46건, 2022년도 24건 총 70건 접수
  - 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(제12차 공운위, '22.9.23.)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ombudsman의 기업성장응답센터 확대 운영 요청('23.6.16.)
- (운영성과) 중소기업 ombudsman과 협력하여 규제애로 개선 성과 도출
  - (수용)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연2회 제출 규정 완화 요청('23.01.01. 접수)
  - (장기추진)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에 비영리법인 명시('22.11.09. 접수)
  - (장기추진)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('22.11.16. 접수)

## 2. 권역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

- (운영방식) ①규제애로사항 접수 → ②신고서 작성 → ③제출
  - (접수) 설립·운영 상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애로사항 접수
    - \* 현장방문, 제도개선 간담회, 상담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 기업성장응답센터 담당자 또는 소관부서 자체 발굴 애로사항 포함

- (작성) 규제애로 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애로신고서 작성

<p><b>※ 작성 시 유의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접수사항) 단순 민원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</li> <li>- (접수제외)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, 국민불편 과제, 단순 정보안내 사항,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·불투명한 과제 등</li> <li>- 규제애로 사례와 참고자료, 관련 법령 등 사안의 구체성 중요</li> </ul>
--

- (제출) 지원기관 이메일로 제출
  -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팀 이메일([mdcoop@moducoop.com](mailto:mdcoop@moducoop.com))로 규제애로신고서 제출

**< 참고: 기업성장응답센터 진흥원·지원기관 운영 프로세스 >**

온 / 오 프 라 인	<b>규제애로신고</b>	<b>신고접수</b>	<b>검토 분석</b>	<b>규제 처리</b>	<b>환류</b>
	통합정보시스템 신고 (누리집)  기업(신청자), 지원기관	⇒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 진흥원, 지원기관	⇒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진흥원	⇒ (대내소관) 관련부서 협의 (대외소관) 중기음부즈만 진흥원, 중기음부즈만	⇒ 쟁점사항 조정협의 및 개선사항 안내  진흥원→기업

\* 처리기한은 60일 이내(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, 예외 있음)